

2023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인원	시험과목
총계				159	
제1회 임용 시험	소계			147	
	행정(일반행정)	일 반	9급	4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장 애 인	9급	1	
		저소득층	9급	1	
	세무(지 방 세)	일 반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장 애 인	9급	1	
	전산(전 산)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9급	1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장 애 인	9급	4	
	사서(사 서)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속 기)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업(일반기계)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일반전기)		9급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화학)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일반농업)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산림자원)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건(보 건)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간 호)		8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일반환경)		9급	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일반토목)	일 반	9급	2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저소득층	9급	1	
	시설(건 축)	일 반	9급	2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저소득층	9급	1	
	시설(지 적)		9급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송통신(통신기술)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전(운 전)		9급	6	필수(3)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인원	시험과목	
제2회 임용 시험	소계			12		
	경력 경쟁	수의(수 의)		7급	2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3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	9급	1	
			방사선	9급	1	
			치과위생	9급	2	
		공업(일반기계)	기술계고 구분모집	9급	1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시설(일반토목)		9급	1	필수(3) 물리, 토목일반, 측량
		시설(건축)		9급	1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출제범위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 중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제1·2차 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 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응시연령

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20세 이상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2006년 1~12월 출생자(조기 입학자)도 응시가능

※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 거주지 제한(단, 수의 7급은 거주지 제한 없음)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타 지역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 기준)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면접시험 최종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 학과성적은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졸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의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 **2024년부터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 요건을 적용함**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5.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6.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2023. 6. 26.(월) ~ 6. 30.(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의 서류를 취합하여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제출기간 중 근무시간 내에 방문 / 등기우편은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선발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아래의 “사”항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별표 2]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습니다.
-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 학력·자격(면허)증 제한(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제1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전산(전산)		9급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1·2·3급
		사서(사서)		9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속기)		9급	한글속기 1·2·3급
		간호(간호)		8급	간호사, 조산사
		시설(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전(운전)		9급	제1종 운전면허(대형)
제2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수의(수의)		7급	수의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9급	물리치료사
			방사선	9급	방사선사
			치과위생	9급	치과위생사
		공업(일반기계)		9급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일반토목)		9급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건축)		9급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024년부터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폐지되고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됩니다.

-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해당 자격(면허)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제1회 임용시험	3.13.(월) 09:00 ~ 3.17.(금) 18:00 (취소마감일 : 3.20.(월) 18:00)	필기시험	5. 19.	6. 10.	7. 11.
		면접시험	7. 11.	8. 9.~8. 18.	9. 7.
제2회 임용시험	7.17.(월) 09:00 ~7.21.(금) 18:00 (취소마감일 : 7.24.(월) 18:00)	필기시험	10. 6.	10. 28.	11. 24.
		면접시험	11. 24.	12. 7.	12. 19.

-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2)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일정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콜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8·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dpi)는 100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6. 10.(토), 10. 28.(토)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직 공개경쟁·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동일 날짜에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붙임」‘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사항 제공 안내(임신부 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직렬(직류), 구분모집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7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가산특전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시 적용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대상자 등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5) 등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의 직렬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세무직	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보건직	보건	9급	임상심리사 1·2급	5%

-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해당분야 응시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제외)

구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 가산제외 직렬 : 전산, 사서, 숙기, 간호, 지적, 운전, 수의, 의료기술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붙임참조)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구 분	등록기간
제1회 임용시험(6.10. 시행)	2023. 6. 10.(토) ~ 6. 12.(월)
제2회 임용시험(10.28. 시행)	2023. 10. 28.(토) ~ 10. 30.(월)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9 시험문제 공개여부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울산광역시 자체 출제한 문제는 비공개 하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위탁출제 과목(인사혁신처 출제)

구분	과목수	대상 과목(공개)
제1회 임용시험	36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단, 운전직 과목은 모두 자체출제 함(비공개)
제2회 임용시험	8개	생물,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라.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마. 답안지의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 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동영상 및 음악 재생장치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아.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경우, 경력경쟁은 각 과목만점의 40%미만 득점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할 경우는 불합격 처리되며,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 하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점 적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팀(☎ 052-229-2443~244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조정 : 20세 이상 ⇨ 18세 이상
-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폐지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폐지 및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산	전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산 업 기 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단위 요건 적용
 -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

□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직렬	직류	현 행	변 경
보건연구	의학	해당 학(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한 사람	⇒ 해당 학(관련 계통의 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약학		
	공중보건		
환경연구	환경		